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金炳旭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329

발의연월일: 2022. 7. 6.

발 의 자: 金炳旭・강대식・김승수

김학용 · 노용호 · 박성민

백종헌 • 유의동 • 이명수

하영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 비용을 지원하는 특별회계이며, 2017년에 3년 한시 회계로 설치된 이후 2022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된 상태임.

그런데 누리과정제도는 재원의 통합 외에 유아교육·보육기관의 통합과 소관부처 관련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 연장과 후속조치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일몰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일 31일로 연장함으로써 유아교육·보육 통합과정 정책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법률 제 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부칙 제2조 중 "2022년"을 "2 024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법률 제14395호 유아교육지원특
별회계법 부칙	별회계법 부칙
제2조(유효기간) 이 법은 <u>2022년</u>	제2조(유효기간) <u>2024년</u> -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